

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0-41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중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히 군민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사용 용어로 변경(안 조례 전반)

1) 긴급 재난기본소득 ⇒ 긴급재난지원금

나. 이중지원 제한근거 삭제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·제22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 : 생략(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)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 “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”를 “거창군 긴급재난
지원금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긴급히 재난기본소득”을 “긴급재난지원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, 제3조, 제4조 조 제목 및 제1항·제3항, 제5조 중 “재난기본
소득”을 “긴급재난지원금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대상 및 범위”를 “범위”로 “규칙으로”를 “군수가 따로”로
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<u>긴급히 재난기본소득</u>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<u>재난기본소득</u>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. 제4조(재난기본소득 지원)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<u>재난기본소득</u>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<u>재난기본소득</u>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은 <u>규칙으로</u> 정한다. 제5조(환수)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<u>재난기본소득</u>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 제6조(중복 지원 제한) 제4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.	<u>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<u>긴급재난지원금</u>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“<u>긴급재난지원금</u>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. 제4조(긴급재난지원금 지원)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<u>긴급재난지원금</u>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<u>긴급재난지원금</u> 지원 범위 등은 <u>군수가 따로</u> 정한다. 제5조(환수)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<u>긴급재난지원금</u>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 <u><삭 제></u>